

일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을 위한 법령 개정

https://www.mlit.go.jp/report/press/house05_hh_000941.html
https://www.mlit.go.jp/report/press/house05_hh_000920.html

일본 정부가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을 통한 탈탄소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4월 탈탄소화 사회 실현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建築物のエネルギー消費性能の向上に関する法律等, 이하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 등을 개정하고, 6월 공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11 월에는 개정법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과 ‘건축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이뤄진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 개정안에는 ▲에너지 절약 기준의 의무 적용 대상 중대 규모 비주택에서 전체 신축 주택과 비주택으로 확대하고 ▲탑러너 제도를 확충하며 ▲매매 또는 임대 시 에너지 절약 성능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보수를 추진할 때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이용촉진지구 내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재생에너지 도입 효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방화 규제와 구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건축물의 목재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11 월에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 시행령을 통해 개정법의 구체적인 시행일을 2023년 4월 1일로 정하였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이 주택 탑러너 제도의 대상이 된 분양 맨션 사업자에 대해 연간 1,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그 범위를 명시하였다. 건축기준법 시행령도 정비되었는데, 주택의 거실에서 창문 등 채광에 필요한 면적을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세부 사항이 담겼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 시행 홍보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建築物省エネ法について,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jutakukentiku_house_tk4_000103.html(검색일: 2022.12.16.)